2009년 정기총회 순서

◆ 강연회

제목 : "2009년 통일운동의 방향"

강사 :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 본 회의

■ 1 부

- 인사말
- 내빈소개
- 축사 1. 6.15남측위원회
- 축사 2. 6.15북측위원회
-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 2 부

- 개회선언
- 성원보고
- 서기 선출 및 사찰 선출
- 안건 및 회순 통과
- 안건 심의
    - 안건 1 :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 안건 2 : 2008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 안건 3 : 2008년 결산 심의의 건
    - 안건 4 : 규약 개정의 건
    - 안건 5 :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 안건 6 : 2009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 안건 7 : 2009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서기록 발표
- <6.15민족통일상> 수여식
- 폐회 선언
- 대합창(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리비치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1

10.4선언 전문..... 2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5

6.15경기본부 규약..... 7

축사 1. 6.15남측위원회..... 11

축사 2. 6.15북측위원회..... 12

축사 3. 6.15해외측위원회..... 13

상임대표 인사말씀..... 14

6.15경기본부 임원 및 체계..... 15

2008년 사업일지..... 17

안건 심의

①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24

② 2008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26

③ 2008년 결산 심의의 건..... 34

④ 규약 개정의 건..... 35

⑤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42

⑥ 2009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43

⑦ 2009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50

참고1.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규약..... 51

참고2.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규약..... 53

6.15남북공동선언 전문

6.15 남 북 공 동 선 언 전 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 대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10.4 선언 전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합의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중 역사적인 상봉과 회담들이 있었다.
상봉과 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우리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치면 민족번영의 시대,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6.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

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 평 양

대한민국 대통령　　노 무 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6.15경기본부 창립선언문

하루빨리 우리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온 겨레의 뜨거운 열망 속에 지난 3월 4일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6.15 공동위원회)>**가 금강산에서 결성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으로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력한 추동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경향각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통일 지향의 의지를 하나의 힘으로 모아낼 튼튼한 조직적 담보를 마련하였고,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앞당겨 그릴 수 있게 되었다.

<6.15 공동위원회>의 결성은 광복 60년, 6.15 공동선언 발표 5돌을 맞이하는 올해를 획기적이며 전환적인 통일국면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인 전민족의 통일선언이다!

우리민족의 의지로 민족통일의 역사적 대 전환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 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이하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을 선언한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외세에 의해 반세기 이상을 갈라져 고통 받았던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민족의 힘으로 다시금 강토와 핏줄을 이어내고자 하는 1천만 경기도민의 절절한 통일 열망을 담아 결성되는 일상적인 통일실천 기구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 남북공동선언을 활동의 원칙으로 삼고 이에 동의하는 경기도의 각계, 각층, 정당, 종교, 사회단체, 인사들이 총 망라되어 결성하는 상설적인 통일운동기구이며,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 조직체이다.

광복 60년이자 분단 60년의 지난 세월, 일제강점기 까지 포함하여 한 세기를 우리민족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강요당해왔다. 끊임없이 전쟁의 위협과 불안 속에 살아야했고, 강대국에 의해 우리민족의 자주권은 유린당해왔으며 민족문화를 꽃피우고 평화롭게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해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끊임없이 자주권을 회복하기위해 피나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기어이 2000년 6월 15일 역사적인 평양상봉으로 6.15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면서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창조해 내고야 말았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민족의 자주적 염원에 기초하여 탄생한 우리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담보이며, 자주통일의 시간표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로 불신과 대결의 시대를 마감하고 공존과 평화의 새시대가 열렸으며, 통일운동은 일부가 아닌 전민족이 함께 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의 결성으로 민족의 힘으로 탄생시킨 6.15 남북공동선언이 밝혀준 길을 따라 민족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단결할 것이며,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와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분단의 고통이 가장 절절하게 스며있는 지역이다. 그 어떤 도시보다 분단의 장막을 길게 드리우고 있는 지역이며, 분단으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는 곳이 또한 경기도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우리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반도에서의 그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반대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강토와 자주권을 유린하고자 하는 모든 외세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민족 통일만이 우리 조국의 완전한 평화의 정착이다.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을 기념하고 1천만 경기도민들이 함께 하는 다양하고 대중적인 통일운동,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운동을 일상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며 이 모든 사업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벌어질 수 있도록 <6.15 공동위원회>의 지역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또한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는 거족적이며 역사적인 통일대업에 경기도의 제 단체와 인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다.

같은 민족보다 더 큰 동맹은 없으며, 민족만큼 강한 공동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러하기에 민족이 갈라져서는 어떠한 번영도 발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유린하는 외세에 맞서 100년을 싸워온 자주성 드높은 자랑스러운 민족답게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로 총 망라되어 조국통일의 시간표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통일민족으로서의 존엄을 세계만방에 떨쳐나가자!

전민족이 함께 하는 반전평화공조, 통일애국공조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가 가장 앞장서 나가자!!

6.15 공동위원회 경기본부 결성 만세!
6.15 남북공동선언 만세!
조국통일 만세!

2005년 4월 29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 경기본부

6.15경기본부 규약

제정 : 2005. 4. 29
1차 개정 : 2006.3.16
2차 개정 : 2007.3.27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5조(운영원칙)

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②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 3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 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2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②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과한 사항

⑤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 인선에 대한 건

⑥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⑧ 예산의 조정과 전용

⑨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⑩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위원회

제15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제16조(구성과 소집)

①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② 공동집행위원장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동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④ 집행위원회 소집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절 집행위원회

제18조(구성과 소집)

①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시 공동집행위원장회의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6.15경기본부의 제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집행

제6절 자문기구

제20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21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2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로 한다.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2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4조 (사무처)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5조(수입 및 지출) 6.15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6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책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축사1. 6.15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총회 축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의 동지들과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9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날이 참니다. 문득 휘몰아쳐 온 겨울 추위가 자꾸만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 애써 굴려온 역사의 수레바퀴가 자꾸만 역진하는 것을 목격하는 참담함도 큽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혹독한 겨울도 시간을 인내하면 결국은 따뜻한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듯이 삭풍 부는 한반도에도 끝내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올 것을 믿습니다.

2008년 6.15민족공동위원회는 금강산 6.15대회를 어렵게 성사시켜내면서 긴박한 내외정세의 흐름 속에서도 남북 민간교류와 통일운동의 맥을 이어나갔습니다. 2005년 이래의 성대했던 민족공동행사에 비추어보면 아쉬움도 큽니다만, 그래도 당국 간 관계가 꽉 막힌 가운데에 유지된 민간 통일운동의 연대와 교류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정세에서도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 사업을 꾸준히 전개해온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호흡으로 민족의 미래를 낙관하는 여유를 가져야 하겠지만 2009년의 남북관계, 통일 정세도 결코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으로 6자 회담이 순항할 것을 기대해보지만 또 어떤 난관과 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경기본부의 총회는 변화된 정세 속에서 지역의 통일 일꾼들이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정세가 어렵다고 해서 소수의 선진적 실천에 국한되지 않고 다수 국민대중과의 교감 속에서 폭넓고 신명나는 6.15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이 과도기의 장애를 잘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방식의 교류와 협력을 한층 신중하고 균형있게 진행하는 한 해 사업을 계획하고 다짐할 것을 기대합니다. 경기본부의 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2009년 새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백낙청

축사1. 6.15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해내외에서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고 자주통일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겨레의 통일애국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시기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정기총회가 성대히 개최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면서 전체 참가자들과 귀 본부 성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고 있는 속에서 진행되는 귀 본부의 정기총회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통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 해내외 온 겨레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과 용기를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외의 반통일세력에 의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이 엄중한 도전에 부딪치고 있으며 6.15의 성과가 말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 본부가 앞으로도 북남선언들을 지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단체와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념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합니다.

다시 한 번 귀 본부 정기총회의 성과를 축하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2009년 1월 22일

축사1. 6.15해외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앞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실천하여 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해내외의 목소리가 한층 높은 가운데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총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한데 대하여 축하를 드리며 귀 단체의 총회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와 굳은 연대성을 보냅니다.

귀 본부 총회는 통일의 이정포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10.4선언을 실천, 이행하는데 앞장서려는 귀 본부의 확고한 통일 의지를 다시 한 번 내외에 과시하는 것으로서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크게 고무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가 앞으로도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지역에서 민족공동의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실천, 이행 열풍을 일으켜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통일애국운동에 적극 나서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경기본부 총회의 성과적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2009년 1월 22일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상임대표 인사말씀

지난 1년간 새정부 출범과 함께 6.15정신이 희석되는 것처럼 지나게 된 것을 크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은 갑절의 용기와 힘을 모두어 6.15 정신을 배전으로 강화하여 조국 통일을 앞당기고 민족 화해를 성취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출현하면서 패권보다는 다자주의를 추구하고 세계화에 이를 것을 기대하면서 한미관계의 정상화와 남북 관계의 공조를 보다 든든히 해 나가는데 노력하는 원년이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금년은 단합과 조직으로 6.15 정신의 저변 확대와 애국애족 정신을 드높이는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협력해 주신 6.15 식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총회를 기하여 인사 말씀을 대신 드립니다.

2009. 1. 22.

상임대표 한 명 수

6.15경기본부 임원 및 체계

■ 고 문 (현재 23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김진춘목사 (매원교회)	13	지원스님 (보련사)
2	김추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경기지회장)	14	한성건 (경기도 IT협의회 의장)
3	민경학 (전 전농도연맹의장)	.15	효림스님 (보광사)
4	박기래 (안산통일학교교장)	16	강성종 (국회의원)
5	백규현 (여주세종신문사이사장)	17	문학진 (국회의원)
6	석달윤 (통일운동가)	18	안민석 (국회의원)
7	안재구 (범민련경기인천연합고문)	19	이기우 (국회의원)
8	윤기석목사 (기독교장로회증경총회장)	20	이원영 (국회의원)
9	이기형 (시인)	21	최 성 (국회의원)
10	이태일 (경기대학교 총장)	22	최순영 (경기여성연대고문, 국회의원)
11	임병규 (남양주향토사료관관장)	23	장문하(경기민언련 상임대표)
12	정춘자 (경기여성연대고문)		

■ 지도위원(현재 13인)

번호	이 름	번호	이 름
1	강홍구 (동두천시민연대대표)	8	송재룡 (경희대사회학과교수)
2	김경수 (선문대교양학과교수)	9	이선이 (아주대사회학부교수)
3	김동균 (변호사)	10	임영인신부 (나눔의 집)
4	박공우 (변호사)	11	한옥자 (경기여성단체연합감사)
5	수산스님 (대승원)	12	신종철 (전 경기도의원)
6	김형식(도의원)	13	조복록(도의원)
7	송영주(도의원)		

■ 감사 : 박덕순(경기도의회 의원), 양홍관(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 상임대표 : 한명수 목사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이사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세계밀알 이사장, 창훈대교회 원로 목사)

■ 참가 단체(현재 37)

번호	단 체 명	번호	단 체 명
1	상임대표	20	남북공동선언경기실천연대
2	6.15 고양본부	21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3	6.15 남양주본부	22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4	6.15 성남본부	23	민족예술인총연합회경기지회
5	6.15 수원본부	24	민주공무원노조경기본부
6	6.15 안산본부	25	민주노동당경기도당
7	6.15 안양본부	26	민주노총경기도본부
8	6.15 오산본부	27	범민련경인연합
9	6.15 이천본부	28	원불교경기인천교구
10	(사)대한불교청년회 경기지구	29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11	경기남부총련	30	전농경기도연맹
12	경기청년단체협의회	31	참교육을 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13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32	천도교수원교구
14	경기복지시민연대	33	통합민주당 경기도당
15	경기여성단체연합	34	한국노총경기본부
16	경기여성연대	35	흥사단경기도협의회
17	경기자주여성연대	36	장원철((주) 듀텍홀딩스 대표이사)
18	경기환경운동연합	37	김상회(한일웨딩부페 대표)
19	기장경기노회통일위원회		

■ 운영위원(현재 20인) <운영위원은 이후 더 확대해 나간다>

한명수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
이성구 (6.15 고양본부 상임공동대표)
양정순 (6.15 남양주본부 운영위원장)
박희영 (6.15 수원본부 상임대표)
윤병일 (6.15 성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노세극 (6.15 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길용 (6.15 안양본부 상임대표)
장창원 (6.15 오산본부 공동대표)
홍건의 (6.15 이천본부 상임대표)
류경문 (경기남부총련 의장)
이주현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홍은숙 (경기청협 의장)
김용한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박효진 (전교조경기지부 지부장)
장순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현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장)
배성태 (민주노총경기본부 본부장)
박기춘 (민주당경기도당 위원장)
이홍기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화수 (한국노총 경기본부 회장)

2008.3월~12월 사업일지

<08년 3월>

- 3월 1일 6.15안양본부 3.1절 기념행사 참석
- 3월 5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3월 6일 6.15경기본부 2008년 1차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1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사무국장과의 만남
- 3월 12일 6.15경기본부 32차 운영위회의
- 3월 13일 6.15안양본부 총회 참석
- 3월 14일 6.15남측위원회 지역 집행위원회 회의
- 3월 18일 감사
- 3월 20일 6.15경기본부 총회
- 3월 25일 6.15안산본부 총회 참석
- 3월 26일 6.15남측위원회 통일쌀 모으기 사업 실무회의
- 3월 27일 통일농수산 사업단 워크샵 참가
- 3월 27일 6.15경기본부 통일쌀 기획단 회의

<08년 4월>

- 4월 1일 6.15경기본부 1차 지역집행위 회의
- 4월 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월 2일 10.4선언홍보책자 발간 사전 준비모임
- 4월 2~3일 6.15남북공동위원회장 회동(금강산)
- 4월 4일 6.15경기본부 지역대표자 저녁식사 모임
- 4월 8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통일쌀 10분 설명회
- 4월 10일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지부회의에서 통일쌀 10분 설명회

- 4월 11일 6.15경기본부 33차 운영위회의
- 4월 11일 6.15남측위원회 11차 운영위회의
- 4월 13일 천도교수원교구에서 진행한 3.1운동 제암.고도리 합동 위령제 참석
- 4월 14일 6.15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합도 모임
- 4월 15일 6.15안산본부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17일 6.15고양본부(준) 간담회
- 4월 18일 6.15안양본부 집행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18일 경기시민연대월례회의 10분 설명회
- 4월 18일 경기자주여성연대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0일 대한불교청년연합회 경기지구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4월 22일 6.15안양본부 대표자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2일 6.15고양본부 준비위 결성을 위한 간담회
- 4월 23일 6.15수원본부 총회
- 4월 23일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4일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4일 홍보위원회 1차 회의
- 4월 25일 경기민예총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6일 통일쌀 나누기 경기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
- 4월 26일 경기미 사랑 농촌체험 한마당
- 4월 27일 천도교수원교구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8일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단회의 10분 설명회
- 4월 29일 6.15수원본부 집행위회의

<08년 5월>

- 5월 1일 경기민예총의 국제인형극제 개막행사 참석
- 5월 3일 경기청협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5월 5일 6.15안양본부 어린이날 행사 통일쌀 홍보
- 5월 14일 군포시민단체협의회 대표자회의 10분 설명회
- 5월 15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5월 15일 6.15수원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
- 5월 15일 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부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5월 20일 대한성공회남부교무구 10분 설명회

- 5월 21일 인천경기기자협회 운영위회의 6.15경기본부 설명, 10분 설명회
- 5월 22일 경기여성연대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5월 22일 용인진보연대 운영위회의 10분 설명회
- 5월 22일 경기신문 편집국 항의 방문
- 5월 23일 민주노총경기본부 07년 통일선봉대 벌금 마련 일일주점 참석
- 5월 26일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준비 회의
- 5월 27일 안산 여성노동자회 찾아가는 통일강연
- 5월 29일 6.15경기본부 34차 운영위회의

<08년 6월>

- 6월 1일 통일쌀 나누기 모내기 행사
- 6월 3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6월 3일 6.15안산본부의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초청강연 참석
- 6월 6일 개성보리수확 행사
- 6월 10일 6.15고양본부 창립 대표자회의
- 6월 12일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1차 토론회
- 6월 14일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을 위한 각계인사 선언 동참]
- 6월 14일 6.15수원본부, 6.15안산본부 8돌 기념행사 참가
- 6월 15일 6.15민족통일대회 6.15경기본부 4명 대표단 참가
- 6월 15일 6.15남측위원회 주최의 6.15공동선언 발표 8돌 기념대회 참가
- 6월 17일 도문 방문
- 6월 17-21일 중국 도문 방문
- 6월 22일 올림픽 3차 예선전 남북축구 대회
- 6월 23일 35차 운영위원회 회의

<08년 7월>

- 7월 8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10일 6.15남양주본부 방문
- 7월 14일 민족문제연구소경기남부지부 운영위 회의 참석
- 7월 15일 제2차 홍보위원회 회의
- 7월 17일 6.15경기본부 제2차 집행위원회 회의

- 7월 18일 민주노총경기도본부 통일일꾼 단합대회 참석
- 7월 20일 6.15안양본부 개성관광 참석
- 7월 23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25일 6.15수원본부 통일사랑방 모임 참석
- 7월 2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7월 31일 36차 운영위원회 회의

<08년 8월>

- 8월 1일 경기통일마라톤 1차 기획단 회의
- 8월 7일 6.15남측위원회 13차 운영위 회의
- 8월 8일 대구통일마라톤 준비위 방문
- 8월 9일 6.15안산본부 "광복 63주년 기념 자전거 대행진"
- 8월 9일 6.15수원본부 "광복 63주년 기념 통일한마당"
- 8월 9일 6.15안양본부 "광복 63주년 기념 통일노래자랑 한마당"
- 8월 9일 6.15고양본부 "고양, 파주 통일기행"
- 8월 10일 6.15성남본부 "광복 63주년 기념 통일한마당"
- 8월 13일 광복 63주년 기념 토론회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 8월 14일 6.15안산본부 광복 63주년 기념식 및 기념 공연
- 8월 15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대표자 및 집행위 연석모임
- 8월 15일 6.15남측위원회 "8.15민족통일대회" 참석
- 8월 19일 경기통일마라톤 준비위 2차 기획단 회의
- 8월 20일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 준비위 1차 모임
- 8월 21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8월 26일 6.15경기본부 37차 운영위회의
- 8월 28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준비위 3차 회의
- 8월 31일 개성관광

<08년 9월>

- 9월 2일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 2차 기획단 회의
- 9월 4일 민주당경기도당 대표와의 면담
- 9월 5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개성실무 회담

- 9월 5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준비위 4차 회의
- 9월 8일 6.15광주본부 건설 준비 모임
- 9월 9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준비위 5차 회의
- 9월 9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준비위 준비위원장 회동
- 9월 10일 6.15경기본부 3차 집행위원회 회의
- 9월 11일 백준기 교수 방문
- 9월 17일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준비위 5차 회의
- 9월 18일 공동집행위원장회의
- 9월 22일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 3차 기획단 회의
- 9월 23일~27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평양방문
- 9월 25일 6.15경기본부 38차 운영위회의
- 9월 30일 10.4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

<08년 10월>

- 10월 1일 10.4선언 이행 촉구 1인시위 각 시군본부 동시다발 진행
- 10월 2일 경기지역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
- 10월 3일 10.4선언 1주년 기념 문화제
- 10월 4일 6.15남측위원회의 10.4선언 1주년 기념행사
- 10월 5일 안산 환경하프마라톤대회에서 선전전 진행
- 10월 7일 제3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준비위 회의
- 10월 8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0월 8일 경기통일그림전시회 오픈식 참석
- 10월 9일 6.15남측위원회 15차 운영위회의
- 10월 12일 파주 문화일보 통일마라톤대회 참관 및 홍보
- 10월 13일 한신대 강연
- 10월 13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10월 14일 경기통일정책 제안 2차 토론회 평가
- 10월 16일 6.15남측위원회 지역 집행위원회 회의
- 10월 17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10월 22일 경기통일마라톤 기획단 회의
- 10월 25일 통일쌀 벼베기 행사
- 10월 29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08년 11월>

- 11월 6일 6.15경기본부 39차 운영위회의
- 11월 6일 마라톤 준비팀 최종 점검 회의
- 11월 8일 제 3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11월 11일 마라톤 준비팀 평가회의
- 11월 12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1월 13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11월 19일 6.15경기본부 4차 집행위원회 회의
- 11월 21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워크샵
- 11월 22일 6.15수원본부 토론회 참가
- 11월 24일 6.15오산본부 상임대표 방문
- 11월 26일 국가보안법폐지 칼럼 발송
- 11월 27일 6.15이천본부 상임대표 방문
- 11월 28일 6.15수원본부 통일사랑방 참가
- 11월 29일 6.15경기본부 총준위 1차 회의
- 11월 30일 천도교수원교구 방문

<08년 12월>

- 12월 1일 국가보안법폐지 촉구 기자회견
- 12월 3일 6.15광주본부 준비 주체 모임 참가
- 12월 3일 대한성공회 남부교무구 총사제 방문
- 12월 4일 안산통일포럼 송년회 참가
- 12월 9일 6.15남측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
- 12월 9일 6.15남측위원회 16차 운영위원회 회의
- 12월 10일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 12월 11일 6.15경기본부 40차 운영위회의
- 12월 12일 수원 KYC 후원주점 참가
- 12월 12일 경기민언련 총회 참가
- 12월 16일 6.15경기본부 지역본부 집행위 2차 회의
- 12월 16일 한나라당의 북한인권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 12월 19일 6.15경기본부 후원 송년의 밤

- 12월 23일 6.15안양본부 평화아카데미 준비 1강좌 참석
- 12월 29일 6.15안양본부 송년회 참석
- 12월 30일 6.15경기본부 총회준비위 3차 회의
- 12월 30일 6.15남측위원회 지역본부 집행위원회 회의
- 12월 31일 6.15경기본부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안건 심의

안건 1. 감사보고 및 심의의 건

[주문사항 : 감사보고서를 심의해 주십시오.]

6.15경기본부 2008년 감사보고서

회계연도 : 2008년 3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감사일시 : 2009년 1월 22일
감사장소 :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실
감사자 : 박덕순, 양홍관
피감사자 : 안영욱

1. 사업감사

o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사무처 식구들에게 수고의 인사를 먼저 보냅니다.

o 2008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는 어려움 속에서도 6.15공동선언의 내용을 알려내고 경기지역의 통일운동을 풀어가고자 했던 노력이 돋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시기별, 방법별로 다양한 통일사업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보다 대중적인 형태로 전 경기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재정 감사

o 기본적인 인건비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같은 재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단체별로는 회원의 기본의무인 회비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무처에게만 재정문제의 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재정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 : 박 덕 순 (인)
감사 : 양 홍 관 (인)

[illegible]

[illegible] : 2008년 [illegible] 1일 2008년 12월 31일
감사일시 : 2009년 1월 22일
감사장소 : [illegible]
감사자 : 박덕순, 양홍관
피감사자 : 양영욱

1. 사업 감사

○ 어려운 살림을 꾸려온 사무처 식구들에게 수고의 인사를 먼저 보냅니다.

○ 2008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권이 바뀌고 정세가 바뀌는 어려움 속에서도 6.15 공동선언의 내용을 알려내고 정기지역의 통일운동을 [illegible] 했던 노력이 돋보이는 한 해였습니다. 시기별, 방법별로 다양한 통일사업을 잘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보다 대중적인 행태로 전 경기도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통일사업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재정 감사

○ 기본적인 인건비 마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아주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같은 재정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단체별로는 회원의 기본의무인 회비를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무처에게만 재정문제의 해결을 맡기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재정문제 해결의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감사 : 박 덕 순 (인) 박 덕순
감사 : 양 홍 관 (인)

안건 2. 2008년 사업평가 심의의 건

[주문사항 : 2008년 6.15경기본부 사업 평가안을 심의해주십시오.]

6.15 경기본부 2008년 활동 평가서

1. 총평

o 이명박 정권 당선 이후 평화, 통일의 객관적 환경이 심각하게 후퇴했으며, 남북관계 전면 차단의 위기가 조성되었다.

- 통일부 폐지 및 반 6.15 인사의 통일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시작된 평화, 통일의 객관적 환경의 후퇴는 3월 남북 당국간 대화 전면 중단을 시작으로 기어이 군사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통행 차단, 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일부 철수 등 남북관계 전면 차단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민간교류 부분적 불허, 대북 인도적 지원 중단, 반북단체의 삐라살포 묵인, 서해지역에서의 군사행동 강화 등 대북 적대정책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 한 상황이다.
-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평화, 통일을 향해 꾸준하게 발전해 온 남북관계가 이처럼 10년 이전으로 후퇴한 주요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6.15, 10.4선언에 반하는 대북적대정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o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평화·통일세력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현 시국에 대한 우려와 6.15 남측위원회 정치적 역할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6.15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평화 통일세력의 6.15선언 8돌 기념 남북공동행사, 8.15 63돌 기념식, 10.4선언 1주년 기념 임진각 행사 등 주요 기념일을 기점으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의지를 밝히는 행사는 중단없이 진행되어왔으나, 작년까지 지속되어오던 6.15 기념일 제정사업을 비롯한 대중적 통일운동이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더불어 이명박 정부와 보수 진영의 반북대결행동과 반6.15 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6.15 선언 고수 이행을 위한 정치적 활동이 상당부분 위축되었음. 6.15 남측위원회 사무실 폐쇄, 상근 인력 정리 등 사실상 소강국면으로 접어드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
- 반면, 각계 평화 통일세력의 현 시국을 우려하는 시국모임 개최, 6.15 남측위원회를 강화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각 지역본부 워크샵 진행 등 지금의 남북관계 단절 국면을 넘어서고 6.15 본부의 제 역할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다.

o 어려운 객관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6.15 경기본부를 비롯한 소속 부분 지역 조직의 꾸준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 6.15 경기본부 또한 현 객관적 여건의 영향으로 소속단위의 이탈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고양, 광주 등 새로운 지역조직 건설, 의회의원단 통일연구모임과의 정책연대, 경기통일정책포럼 건설모임 등 어려운 환경을 딛고 6.15 이행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성과적 활동을 이어왔다.
- 경기본부의 각 부분과 지역조직 또한 계기와 사안을 놓치지 않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고수, 실천을 위한 각종 대중사업, 기념사업, 교육사업을 진행해 왔다.
- 이러한 6.15 경기본부와 각 지역 부분 조직의 활동은 정권이 바뀜으로 인해 6.15 선언 이행의 객관적 여건은 상당부분 후퇴했다 하더라도 6.15공동선언이 여전히 우리민족의 단결과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최고의 기치임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과정이라 할 수 있다.

o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대중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통일쌀 나누기 운동, 6.15 기념일 제정사업, 제 3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등 6.15 이행을 위한 대중사업이 보다 많은 시, 도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대중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 절실하다.
- 더불어 6.15 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하고 10.4선언을 실천해 나가는 객관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6.15 세력에 대응하는 정치활동 영역도 부단히 넓혀 나가야 한다.

2. 분야별 사업 보고 및 평가

1>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 지지 이행사업

■ 진행사업

o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1차 토론회 (6월 12일)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진단과 남북관계 전망
  : 수원방송 방영
- 2차 토론회 (10월 2일)
  : 지방정부의 남북교류사업 성과와 방향
  : 경기도의회 통일연구모임과의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연대.

o 반 6.15 행위 및 여론에 대한 대응사업
-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60주년 기념 성명 발표
- 광복 63주년 기념 토론회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 한미한동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및 대북 전쟁훈련 반대” 성명 발표
- 10.4선언 지지 선언 및 이행 촉구 기자회견과 경기지역 동시다발 1인시위 (총 21곳에서 진행)
- 6.15 공동선언, 10.4선언 지지 이행 촉구 성명발표

o 6.15 이행을 위한 법 제도 정비 촉구 활동
- 6.15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광고 운동 (156만원 모금, 경인일보와 경기신문 광고)
- 국가보안법 폐지 및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 폐기(6.15 이행촉구) 촉구 활동
 : 경기지역 언론사 13곳 기고글 게재
 : 국가보안법 폐지 및 6.15 공동선언 이행 촉구 기자회견.

o 여론화 사업
- 홍보위원회 신설과 매주 언론사 칼럼 보내기 활동 (총 17회 진행)

o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사업
- 통일쌀 나누기 운동 (총 모금액 200만원)
- 개성 통일기행 (1차례 진행 140여명 참가)
- 경기 청소년통일 합창제전 (민예총 주최 경기본부 후원의 형태로 진행)
- 제 3회 경기통일마라톤대회 진행 (850여명 참가)

o 6.15, 10.4 선언 기념 사업
- 6.15 8돌 기념 민족통일대회 대표단 파견 (경기본부 총 4명의 대표단 참가)

- 6.15 공동선언, 10.4선언 실천을 위한 전국 각계 인사 공동선언 참여 (6.15 공동선언 8돌 기념 6.15 남측위원회 사업)
- 6.15 공동선언 8돌 기념 행사 참가 (남측행사)
- 6.15~8.15 기간 단일기 통일기 함께 달기 운동 (총 100개 판매)
- 남북 월드컵 예선 축구대회 공동응원 참가 (경기본부 15명 참가, 단일기 판매)
- 광복 63주년 기념 8.15 민족통일대회 참가 (남측 행사)
- 10.4선언 1주년 기념 “6.15 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위한 작은 문화제” 진행
- 10.4선언 1주년 기념 1004 평화통일열차 행사 및 10.4선언 1주년 기념식 참가

■ 평가

o 성과점

- 정부 당국의 반 6.15 정책과 대북 적대정책에도 불구하고 6.15 경기본부를 비롯한 각 부문 시군본부에서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냄으로써,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기치로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변할 수 없음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했다.
- 경기본부의 통일마라톤대회, 각 시군본부 및 부문에서 진행된 통일달리기대회, 통일걷기대회, 통일쌀 나누기 사업 등 6.15 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해 나가기 위한 각종의 대중참여형 사업과 기념행사가 경기본부와 시군본부에서 연중 끊이지 않고 진행됨으로써 대중과 함께 하는 통일운동을 정착시켜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 북을 상대로 하는 군사훈련 반대, 건국절 제정 시도를 규탄하는 토론회, 각종 반북대결적 움직임에 대한 기고 글 사업과 성명발표 등 6.15 정신을 고수하는 공동위원회로서의 정치적 역할을 놓치지 않고 전개해 왔다.

o 과제

-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의 대중화를 위한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여전히 각종 기념일을 계기로 하는 행사성 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을 극복하고, 통일교육사업과 시, 도민 참여형 6.15 이행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기 태극기 함께 달기 운동, 경기통일마라톤대회, 통일쌀 나누기 운동 등 대중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홍보와 참여의 통로를 확보, 많은 시 도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유명인사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경기본부의 매 사업을 대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6.15 공동선언을 고수 이행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건설된 단체인 만큼 이에 대한 훼손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영향력있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반북

단체의 대북 전단살포 행위 등 6.15 선언에 위반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으로 시기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치력, 기동력을 높여야 한다.
- 예산문제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 예산을 초과해 진행되다 보니 부채가 남는 사업에 대비해 사업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경기본부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2> 경기본부 조직 확대 강화 사업

■ 진행사업

o 조직 강화를 위한 활동
- 운영위 회의 총 9차례 진행 (10월 운영위 못함)
- 6.15 경기본부 지역 대표자 모임 1차례 진행 (4월 4일)
- 6.15 경기본부 고문, 감사, 지도위원 모임 1차례 진행 (4월 14일)
- 경기본부 집행위회의 총 4차례 진행

o 조직 확대를 위한 활동 : 미조직지역 건설을 위한 활동 및 6.15 경기본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
- 6.15 고양본부 건설을 위한 간담회 추진, 6.15 고양본부 발족
- 6.15 광주본부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진행
- 경기통일포럼 준비모임 신설

o 소식지 발간사업
- “6.15 경기” 신문 2회 발행 (6월과 9월 각 5000부 발행)
- 6.15 경기본부 웹진 2회 발행

o 재정 안정화 활동
- 후원회원 확대사업 : 총 18명 증가
- 재정위원회 구성

o 6.15 남측위원회 강화를 위한 활동
- 6.15 남측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제안
- 6.15 지역본부 개성 실무회담 참가 : 6.15 지역본부의 남북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
- 6.15 지역본부 평양방북 (경기본부 총 6명 참가)
- 6.15 남측위 지역본부 워크샵 참가 : 남측위원회 강화 및 지역본부의 역할

■ 평가

o 성과점

- 6.15 고양본부 건설, 6.15 광주 본부 건설을 위한 주체모임 진행 등 미조직 시군에 새롭게 6.15 본부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6.15 수원본부 집행체계 정비 및 사업 안정화, 6.15 안양본부 집행력 보강 등 전년도에 비해 지역본부의 활동력이 높아졌으며, 이는 경기본부 강화의 토대가 되고 있다.
- 경기통일포럼 준비위원회 주체 마련으로 6.15선언 이행의 전문분야를 넓혀 내는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도 의회 의원단 통일연구모임과의 통일정책 개발을 위한 연대활동 등 경기도와의 관계를 보다 적극화 할 인적 토대가 형성되었다.
- 경기본부 소속 부문 지역 집행책임자 모임이 전년에 비해 안정화 되면서 경기본부 사업에 대한 소속단위로의 공유, 확산이 활성화 되고 있다.

o 과제

- 경기본부를 강화하고 6.15 저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문분야의 인적 토대 마련이 요구된다. 경기통일포럼(준)과 같은 형태의 모임을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분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6.15 경기본부의 폭을 넓히고 6.15 이행세력을 확대해야 한다.
-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본부의 집행력을 보강해야 한다. 집행의 책임이 명확치 않고 사무처로만 일이 집중되는 경향을 극복하고, 계획한 사업의 책임주체를 명확히 세우고 일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경기본부는 정책지원과 정치적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대중사업부분에서는 부문 및 지역본부에서 보다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경기본부 내 역할분담을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경기본부 소속단체 및 시군 본부의 결합력을 높이고 역할을 다해 나가기 위해서는 6.15 본부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높여낼 필요가 있다.
- 회원단체의 회비납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무처 일꾼들의 활동비 및 각종 예산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위원회를 신설하였으나 원활한 활동이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는 재정위원회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지역 부문 역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조건에서 소속단체 구성원들로 재정위원회를 꾸려 경기본부 재정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대안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본부의 지도위원, 자문위원, 고문 등 본부 내 인적 구조를 활

용하여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3> 통일교육사업

■ 진행사업

o 찾아가는 통일학교
- 수원여성회, 안산 여성노동자회 2차례 진행

o 경기통일아카데미
- 지역별 추진 (6.15 안양본부 “평화아카데미”추진 중)

■ 평가

o 찾아가는 통일학교는 예산 부족과 교육대상을 조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교육사업이 필요한 단위에 강사를 섭외해 주는 형태로 밖에 추진되지 못했다. 6.15 선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 화해와 평화정착 및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기 위한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회원단체 뿐 아니라 각종 교육기관 등 제도적 여건을 활용한 통일교육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교류협력사업

■ 진행사업

o 개성 남북공동 경작 사업
- 보리 경작 사업 추진 (6월 6일 6명의 경기본부 대표단 개성 방문, 김포시농업기술센타에서 보리 종자 및 비료 지원 활동)

o 중국 도문 방문
- 경기본부 11명 도문 방문, 지원사업에 대한 논의. (구체적 추진 사업은 없음)

■ 평가

o 정부당국자 관계가 중단된 것 뿐 아니라 민간교류 마저 중단 위기에 놓인 조건에서 적극적인 교류협력사업의 확대가 어려운 한해였다.
- 6.15 남측위 지역본부 평양방북 행사를 통해, 6.15 북측 본부와 남측의 지역본부간 공동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경기본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개성에서의 쌀 공동경작 사업과 중소 규모의 지속적인 방북사업에 대해 북측의 동의를 얻는 성과는 있으나 구체적 사업추진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풀리고, 적극적인 북과의 공동사업이 추진될 시기를 예비해 콩우유 지원사업과 같은 형태의 교류협력 사업의 틀을 유지하고, 인적 역량을 확보하여 경기본부 내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연대사업

■ 진행사업

o 6.15 경기본부 2008년 총회 초청사업
- 민족통일경기도 협의회 초청, 축사

■ 평가

o 경기도내 통일유관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6.15 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였으나 공동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통일쌀 나누기 사업, 마라톤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중사업과 정책사업을 여러 차례 공동주최할 것에 대한 제안은 있었으나, 해당 단체들의 적극적인 요구를 이끌어 내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민주평통 경기협의회 등의 단체들과의 공동사업과 협력은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안건 3. 2008년 결산 심의의 건 (별지 참고)

[주문사항 : 2008년 결산안을 심의해주십시오.]

안건4. 규약 개정의 건

[주문사항 : 6.15경기본부 규약안을 개정해주십시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이하 6.15경기본부) 규약

제정 : 2005. 4. 29
1차 개정 : 2006.3.16
2차 개정 : 2007.3.27

원 안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약칭 6.15경기본부)라 한다.	
제2조(목적) 6.15경기본부는 민족의 통일강령인 6.15 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자주적인 통일조국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격) 6.15 경기본부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경기지역의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제4조(사업) 6.15경기본부는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 한다. ① 6.15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대중적 실천을 전개한다. ② 한반도와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전쟁을 반대한다. ③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 하에 상호 존중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해 노력한다. ④ 6.15경기본부는 6.15남측위원회 사업에 적극 결합하여 활동한다.	
제5조(운영원칙) ① 6.15 경기본부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6조(구성)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경기지역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① 경기지역 단위의 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은 시, 군 단위 본부를 회원으로 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② 각종 사업 및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① 선거권, **피선거권 그리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표결할** 권리 ② **각종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규약을 준수하고 이행할 의무 ② **사업과 활동에** 참가할 의무와 각종 사업에 대해 보고할 의무

③ 재정(회비 및 분담금) 납부의 의무	③ 재정(**회비와 분담금**) 납부의 의무
제 3 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9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 및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9조(구성) 최고의결단위로 **상임대표와 참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제10조(소집) ① 정기총회는 상반기에 진행한다. ② 임시총회는 대표자 1/3이상 발의 또는 운영위원회 결의나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③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결정 및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④ 예산 및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11조(기능) ① 규약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③ 사업계획 **결정과 사업보고** 승인에 대한 사항 ④ **예산과 결산** 승인에 대한 사항
제2절 운영위원회의	
제12조(구성) 상임대표 및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구성) **상임대표, 운영위원,** 특별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제13조(소집)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도록 한다. ②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1/3이상 발의 또는 상임대표의 소집으로 개최한다. ③ 운영위원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제14조(기능)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 및 수임사항 처리 ② 가입, 탈퇴 및 사고에 관한 사항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과한 사항 ④ 공동집행위원장, 상임집행위원장 및 집행간부 인선에 대한 건 ⑤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고문 및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⑦ 예산의 조정과 전용 ⑧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⑨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① 총회 준비와 상정안건 **심의와 수임사항 처리** ② 가입, **탈퇴, 사고에** 관한 사항 ③ 의무금과 특별 분담금 책정에 과한 사항 **④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인선에 대한 건** ⑤ 상설위원회, 각종 특별기구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고문과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⑦ 예산의 조정과 전용 ⑧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사항 ⑨ 기타 제반 일상사업의 계획 및 방침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절 특별위원회	
제15조(구성)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제4절 공동집행위원장 회의	**제4절 집행위원회**
제16조(구성과 소집) ① 공동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② 공동집행위원장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동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구성과 소집) **① 집행위원회는 시군본부 집행책임자와 부문단체의 약간 명으로 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부문단체의 약간 명은 부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④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②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제17조(기능) ①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②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개최 준비와 상정안건 작성 ③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 방침

심의, 집행 ④ 집행위원회 소집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 집행 ④ **필요시 확대 집행책임자연석회의 소집**
제5절 집행위원회	**삭제**
제18조(구성과 소집) ① 6.15경기본부 소속단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시 공동집행위원장회의에서 소집할 수 있다.	**삭제**
제19조(기능) 6.15경기본부의 제반 사업과 운영에 대한 논의 및 집행	**삭제**
제6절 자문기구	**제5절 자문기구**
제20조(구성) 각계 원로 및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제18조(구성)** 각계 **원로와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한다. ①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둔다. ② 각계 지도급 인사들로 지도위원을 둔다
제 4 장 임 원	
제21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19조(임원)** 임원은 상임대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말한다.
제22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 및 운영위원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	**제20조(선출과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상임대표 - 상임대표는 경기본부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 **총회와 운영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 상임대표 궐위 시에는 그 대행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 지역 본부장(시, 군)과 참가단체 대표

로 한다.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 및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로 한다. ③ 운영위원 - 지역본부장(시, 군)과 특별위원장 그리고 가입단체 대표자 가운데서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약간 명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 - 2인으로 하고 **사업과 재정 감사를** 년1회로 하여, 매년 상반기 열리는 정기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 한다.
제2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 장 사 무 처	
제24조 (사무처)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제22조 (사무처)** ① 6.15경기본부의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처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 간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25조(수입 및 지출) 6.15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3조(수입 및 지출)** 6.15경기본부의 재정은 가입단체의 의무금과 후원회비, **사업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총회에서 정한 예산에 따라 운영한다.
제26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책정한다.	**제24조(의무금의 책정)** 의무금은 해당 조직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책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 3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년도)** **회계년도는 당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약은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 수정한 내용

1. ‘및’은 일본식 표기라 ‘와’ 혹은 ‘과’로 수정
2. 제3장 4절 ‘공동집행위원장’을 ‘집행위원회’로 수정
3. 제3장 5절 삭제(18조, 19조 삭제)
4. 조 번호 수정

안건 5. 임시의장 선출 및 임원 선출의 건

[주문사항 : 2009년 6.15경기본부 임시의장을 선출해주십시오.
2009년 6.15경기본부 임원을 선출해주십시오.]

<임원추천안>

임 원	이 름	소 속	비 고
상임대표(1명)	한명수	6.15경기본부 상임대표	
감 사(2명)	박덕순	경기도의회 도의원	
	양홍관	생명살림운동본부 대표	
운영위원(18명)	이성구	6.15고양본부 상임공동대표	신임
	양정순	6.15남양주본부 상임대표	
	윤병일	6.15성남본부 상임공동대표	
	박희영	6.15수원본부 상임대표	
	노세극	6.15안산본부 상임공동대표	
	박길용	6.15안양본부 상임대표	
	장창원	6.15오산본부 상임공동대표	
	홍건의	6.15이천본부 상임대표	
	이주현	경기민언련 공동대표	
	류명화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공동대표	대표자 변경
	홍은숙	경기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최현수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경기지회 지회장	
	김용한	민주노동당경기도당 위원장	
	배성태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본부장	
	박기춘	민주당경기도당 위원장	
	박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지부장	대표자 변경
	이흥기	전농경기도연맹 의장	
	이화수	한국노총경기도본부 의장	

안건 6. 2009년 사업계획 심의 승인의 건

[주문사항 : 2009년 사업계획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6.15 경기본부 2009년 사업계획서

1. 2009년 통일정세의 몇 가지 특징

① 북미관계 개선, 북핵문제의 해결에서의 진전 등 통일을 향한 객관 정세는 지금보다 나아질 것.

o 북미 직접대화를 통한 북미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기대됨.
- 오마바 취임 100일 이내로 대북 특사파견에 대해 오바마 대선 정책기관에서 이미 제안되었음.
- 핵확산 금지 정책은 여전히 미국의 기본 정책으로, 불능화단계까지 온 상황을 거꾸로 돌리지는 않을 것.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 즈음, 북미관계의 극적 전환도 가능한 상황. (6자회담 안에서의 진전보다는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음)

o 미국의 경제위기 역시 심각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하는 대결의 방식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하여 대외정책을 펴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이 일방적인 패권정책으로 일관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 역시 다극화 시대에 추세를 따라 해결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될 것.

②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한나라당, 뉴라이트 세력의 6.15 공동선언 및 10.4선언 무력화 움직임은 다각도로 지속될 것.

o 근본적으로 6.15 공동선언에 동의하고 있지 않은 정치세력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
- 북미관계 진전에 따라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별반 의미가 없음.
- 그 어떤 계기와 압박이 있어 정책전환의 제스츄어가 있을 수 있으나 본질이 바뀌는 변화일 수 없음. (정치적 기반과 철학 자체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 객관적 상황에 밀려 일시적인 행위는 취할 수 있으나 시시때때로 사건사고를 만들어 내면서 6.15 이행을 미루거나 무력화 시키려 할 것임.

o 반북대결, 냉전적 대결구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는 계속 될 것
- 북한인권법, 건국절 등 반민족, 반통일 제도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음
- 전면적인 역사왜곡 움직임.
- 국가보안법의 부활
=> 6.15 이행세력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o 대결을 격화시키는 각종 반북행위 또한 격렬해 질 것이 예상됨.
- 대북삐라살포와 같은 극우 보수세력의 반북대결을 부추기는 행동전이 보다 강력해 질 것 (제도적으로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진행될 것)
- 북침전쟁훈련 역시 중단되지 않을 것. 올해 이전 시기보다 훨씬 규모있게 진행된 것으로 보아 단기간에 중단하거나 규모를 줄이지 않을 것.
=> 이는 명백히 6.15, 10.4선언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북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행위임. 또한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를 끊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은 불보 듯 뻔한 일. 그러나 끊임없이 지속할 것이며, 오히려 북의 격렬한 반대를 빌미로 남북관계 차단의 책임을 북으로 돌리는 여론조작이 이어질 수 있음.

**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 이남의 경제위기의 심화와 서민경제 초토화가 예상되는 속에서 국민들의 이명박정부에 대한 분노가 어디에서 폭발하게 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 이명박 정부가 극단의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지금보다 강력한 폭압통치로 전환할 가능성. 이렇게 될 경우 전쟁위협을 조장하거나 통일운동세력에 대한 폭력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음.)

③ 경기도 상황

o 민관 협력의 남북교류사업보다는 관 주도의 통일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대북사업 부서를 확대하고 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개성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임진각에서의 평화 마라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
- 민간단체에게 교류협력 기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김지사의 발언이 있었으나 6.15 경기본부와 통일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지원할 가능성은 크다고 볼 수 없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모두 통일사업을 관주도의 사업으로 창구단일화 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상황에서 6.15 경기본부에서는 도와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하되 보다 많은 대중들이 평화와 통일의 지향을 갖도록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함.

2. 2009년 경기본부 사업 방향

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제 1 원칙으로서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견지하고, 6.15 공동선언에 반하는 각종 정책과 제도, 민족대결행위에 맞서 공동선언을 지켜내기 위한 정치활동과 6.15 공동선언 고수, 이행의 논리를 적극 개발하고 여론화하는 사업을 강화한다.
②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각종 사업과 활동에서 도본부는 정책적 역할을 높이고, 각 지역본부 및 부문에서는 대중화의 역할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와 시군, 부문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③ 경기지역의 정치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적 인사들에 대한 조직사업을 적극화하여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연구, 생산하여, 경기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④ 6.15 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교육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간다.
⑤ 경기도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대중적 통일사업을 개발한다.

3. 사업 내용

1> 6.15 공동선언, 10.4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활동

① 대중사업

o 경기통일마라톤대회
- 조직위원회를 확대하여 구성하고, 경기도민들의 참여를 넓혀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o 부문 사업에 대한 지원
- 경기본부 소속 각 부문에서 진행되는 각종의 통일사업에 대해 후원, 지원한다.

② 기념사업

o 6.15 공동선언 발표 9돌, 8.15, 10.4선언 2돌 기념사업
- 경기본부에서는 각계 인사와 함께 6.15 공동선언의 정치적 의의를 확인하고 다질 수 있는 강연회 또는 기념식을 진행하고,
- 각 시군본부에서는 시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문화행사를 진행한다.
- 6.15 공동선언의 기치를 보다 철저히 지켜나가야 하는 정세조건에서 가능한 6.15 공동선언 발표일 즈음에 대중참여형 통일한마당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8.15 또는 10.4 기념일에는 강연사업 등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o 통일기 갖기 운동
- 6.15~8.15 기간동안 통일기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8.15때 태극기와 함께 통일기를 게양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 회원단체 성원들을 우선해서 진행하고, 경기도민들의 평화통일 실천운동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o 현수막 걸기
- 6.15, 10.4 기념일에 이를 축하하고, 지지 이행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경기도 주요 거점에 걸릴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책화 사업

o 경기통일정책포럼 준비위원회 활성화
- 경기통일정책포럼 준비위원회를 본조직으로 확대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보다 넓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조직하고, 실질적인 경기도의 통일정책을 연구, 생산하는 단위로 안착화 시켜낸다.

o 경기지역 통일정책 제안 토론회
- 6.15와 10.4 기념일에 맞추어 경기도의 통일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을 적극 제안하는 자리로 정착시켜낸다.

④ 여론사업

o 홈페이지의 활성화
- 경기본부 홈페이지를 대중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 각계의 통일운동 동향, 정부와 경기도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 및 활성화를 위한 제안, 각종 자료의 게시 등을 활발히 게재하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o 반 6.15 행위, 반민족 행위에 대한 정치적 대응 사업
- 홍보위원회 활동과 경기지역 각 언론사를 활용한 기고글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정부와 도의 비판적 기능 뿐 아니라 6.15 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위한 논리와, 평화 통일이 가져올 민족의 번영에 대한 논리 등 긍정적 논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경기본부 조직 강화 확대를 위한 활동

① 경기본부 집행체계 정비

o 집행위원회 건설,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분기별(또는 상하반기)로 정례화
- 공동집행위원장단 체계를 해산하고, 지역 집행책임자와 주요 부문 집행책임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정책과 의견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결정한 사업에 대한 책임있는 집행력을 높여낸다.
- 경기본부 소속 조직의 집행책임자 전원이 참여하여 사업을 공유하고 평가, 토론하는 집행책임자 연석회의를 분기별로 정례화하여 진행한다.

② 경기본부 워크샵

o 상하반기 각 1회씩 경기본부 워크샵 진행
- 경기본부 워크샵을 통해 통일정세에 대한 인식과 경기본부의 결속력을 높여낸다.
- 내부 결속과 교양의 자리로 활용한다.

③ 내부 교양 강화

o 운영위 및 집행책임자 연석회의 등 회의구조를 활용한 교양사업
- 30분 강연회 등을 배치하여 공동위원회 내적으로 6.15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합의를 높여가기 위해 노력한다.

o 각종 반 6.15 제도, 정책, 행위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높여내기 위한 교양활동
- 자료의 원활한 소통

④ 고문, 자문단 모임의 정례화

o 고문 및 자문단 모임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경기본부의 사업이 원활하게 보고, 소통될 수 있도록 한다.
o 고문 및 자문단이 경기본부의 각 사업에서 조언자, 방조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⑤ 재정 안정화

o 소속단체 회비가 안정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원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간다.
o 상하반기 재정사업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와 상근 활동가의 활동비를 충당한다.

3> 교육사업

①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평화와 통일에 대한 지향과 민족공동체의식을 높여낼 수 있는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교육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제도 교육안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찾아가는 통일학교
- 경기본부 소속 회원단체 및 지역본부에서 통일교육을 계획화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 경기본부는 각 부문과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진을 지원한다.

③ 안양과 안산의 아카데미 사업의 모범 확산

- 안양의 평화아카데미, 안산의 통일아카데미의 모범적 사례를 타 지역으로 전파, 확산하여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세력이 6.15 공동위원회 두리에 뭉치는데 기여하는 교육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4> 남북공동사업

(지난 08년 6.15 남측위 지역본부 평양방북을 통해 북과 합의를 통해 "교류사업"을 "남북공동사업"으로 정리하기로 하였음)

① 평양 방문사업

- 지난 해 6.15 남측위 지역본부와 6.15 북측위원회가 합의한 평양방북사업이 본격화되면 경기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8~9월 경 평양기행 사업을 합의한 바 있으나 남북관계가 차단됨으로 인해 현재 실무협상을 비롯해 사업의 추진이 일시 중단된 상황임)

② 지원사업 형태를 통한 남북공동사업의 추진

- 현재 일부 시 군본부 또는 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콩우유 보내기 운동과 같은 형태의 지원사업을 남북관계의 개선 여부에 따라 경기본부의 남북공동사업으로 확장하여 추진한다.

③ 기타 남북공동사업

- 남북관계가 열리고, 개성과 금강산 관광이 재계되면 청소년 금강산 수학여행과 같은 형태의 방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안건 7. 2009년 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별지참고)

[주문사항 : 2009년 예산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참고1. 6.15민족공동위원회 규약

1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약칭 6.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 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남, 북, 해외의 각 정당,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민족공동행사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2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조직 원칙과 구조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 인사들로 구성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3)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서로의 활동을 존중하며, 민족의 요구와 이익에 맞게 활동해나간다.
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부문별, 지역별 조직들을 둘 수 있다.

3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운영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 실무회의를 통해 운영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연 1-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소집한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가 주최

하는 주요 민족통일행사들과 공동의 통일운동 방향 등을 토의, 결정한다.

3)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하여 소집하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사업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조정하고 합의한다.
4)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와 공동위원장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합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무회의를 운영한다.
5)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각기 실정에 맞게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만들 수 있다.

4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의 공동사무국

1)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동사무국을 둔다.
2)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공동사무국의 설치시기, 구성 및 기타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은 남측위원회,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 위원장의 합의에 따른다.

5조.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규약의 개정

규약의 개정은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가 한다.

이 규약은 2005년 12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통과 즉시 발효한다.

참고2. 6.15남측위원회 규약

제정 2006년 2월 15일

제 1 조 성격과 목적

1.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을 실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려는 정당, 종교, 단체, 인사들을 폭넓게 망라하기 위한 상설적인 통일운동연대조직이다.
2. 6.15남측위원회는 남북해외 공동의 민족공동행사와 각계각층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통일운동을 조직하고 집행해나간다.

제 2 조 운영 원칙

1. 6.15남측위원회는 참가한 단체와 개인의 연대와 합의의 정신에 따라 조직되고 운영된다.
2. 6.15남측위원회는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와의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실천한다.

제 3 조 공동대표회의,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① 공동대표회의

1. 6.15남측위원회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0명 내외의 공동대표로 구성되는 공동대표회의를 둔다.
2. 공동대표회의는 6.15남측위원회의 주요 활동 및 운영 방향을 토의 결정한다.
3. 공동대표회의에서는 상임대표, 명예대표, 운영위원, 공동대표,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한다.
4. 공동대표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공동대표 1/5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상임대표의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5. 공동대표회의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6. 공동대표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소속단체의 집행책임자 또는 다른 공동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된 45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사업계획,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3.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다른 운영위원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둔다.
2.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심의, 상정하며 공동대표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합의 결정한 사항의 집행을 책임진다.
3. 집행위원회를 총괄하기 위해 약간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두며,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상임대표가 임명한다. 공동집행위원장단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상임대표 또는 집행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4. 집행위원회는 공동집행위원장단, 정책위원회 상임위원 중 1인,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집행위원, 부문계층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광역시도별 본부의 집행책임자, 분야별위원회의 집행책임자, 대변인실의 집행위원, 사무처장단 등으로 구성한다.

제 4조 상임대표, 명예대표, 고문, 상임고문, 감사

① 상임대표 및 명예대표

1. 6.15남측위원회는 1인의 상임대표와 약간 명의 명예대표를 둔다.
2. 상임대표는 대내외적으로 6.15남측위원회를 대표하며, 6.15남측위원회의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상임대표는 필요시 자문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상임고문

1. 6.15남측위원회는 고문과 상임고문을 두며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다.

③ 감사

1. 6.15남측위원회는 업무와 재정을 감독할 2 -3인의 감사를 둔다.

제 5조 부문계층별, 지역별 본부

① 부문계층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부문계층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부문계층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부문계층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② 광역시도별 본부

1. 6.15남측위원회는 광역시도별 본부를 둘 수 있다.
2. 6.15남측위원회의 소속단체나 인사가 광역시도별 본부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공동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광역시도별 본부의 활동 및 운영은 6.15남측위원회의 운영원리와 규약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 6조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 분야별위원회, 대변인

① 정책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6.15남측위원회의 활동방향에 대한 제반 정책적 내용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며, 토론회와 포럼 등 각종 형식의 정책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책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하며, 약간 명의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공동대표회의 또는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특정 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야별 위원회

1. 6.15남측위원회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 총무, 조직, 지역, 홍보, 국제연대 등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설치는 집행위원회의 제안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④ 대변인

1. 6.15남측위원회는 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대변인과 약간 명의 부대변인을 둘 수 있다.
2. 대변인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제 7조 사무처

1. 6.15남측위원회는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는 집행 상의 제반 실무적 과제를 수행한다.
3. 사무처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장과 약간 명의 협동사무처장을 둔다.
4. 사무처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적정인원의 상근 혹은 비상근의 간부 및 간사를 채용한다.

제 8조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대표단 구성

1. 6.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 및 공동행사에 참가하는 남측대표단은 공동대표회의에서 정한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 실무회의에 파견될 대표단은 상임대표가 정한다.

제 9조 재정

1. 6.15남측위원회의 재정은 소속단체 및 인사들의 회비와 후원금, 행사참가비, 기타 등으로 충당한다.
2. 6.15남측위원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 1회 감사를 통해 재정을 감독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공동대표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발효된다.